

#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 회칙

2009.6.30. 회칙 승인

2014.11.27. 변경승인

2015.11.26. 변경승인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“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(국제명칭은 THE KOREAN MUSEUMS ASSOCIATION OF BUSAN CITY.라 하고 영문약자는 KMAB로 한다.)

### 제2조(목적)

본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내의 박물관·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부산광역시 내의 박물관·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자료교환 및 지원사업
2. 박물관·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전시 지원사업
3. 박물관·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
4. 공동 연구발표회 관련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
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회원

### 제4조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나 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인준한다.(2015.11.26. 개정)

1. 정회원 :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내 등록박물관·미술관
2. 준회원 :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광역시내 미등록박물관·미술관
3. 특별회원 :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및 단체

#### 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의결권의 행사  
는 정회원으로 하며 각 회원기관 단위로만 행사할 수 있다.
2. 회원은 본회의 회칙의 준수 및 총회·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 
발전과 사업수행을 위한 소정의 발전기금 또는 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회원의 자격상실)

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회의 심의와 총회  
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조직

#### 제7조(조직의 구성)

본회에는 임원회와 총회를 두며 임원회는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업  
무 제반사항을 논의, 결정하며 고문 및 필요한 경우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## 제8조(임원의 구성)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감사1인
4. 총무1인 (2014.11.27 삭제)

#### 제9조(임원의 선임)

1.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2.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.
3.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.

#### 제10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총회에서  
재선출한다.

#### 제11조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4. 총무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지역대표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당연직으로 한  
다. (2014.11.27 삭제)

#### 제12조(임원회의 기능)

1. 사업의 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의결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기타 중요 사항

#### 제13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#### 제14조 (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)

1. 사무국은 회장이 속한 기관에서 운영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둘 수 있다.
2. 사무국은 회계업무 및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(2014.11.27 신설)

### 제4장 총회

#### 제15조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16조(구분 및 소집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2.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기준일인 1월 1일 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기관회원 1/3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.
3.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7조(총회의 기능)

1. 임원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승인

#### 4.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

##### 제18조(총회의 의결)

1.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한다.
2. 총회는 재적회원기관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9조(재원)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.

1. 지원금
2. 발전기금 및 제부담금
3. 회비(100,000원). 단, 회비는 기관사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(2014.11.27 신설)

##### 제20조(예산과 결산)

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##### 제21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.

##### 제22조(경비지출)

모든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,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다.

##### 제23조(기타사항)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#### 제6장 부칙

본 회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변경 회칙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변경 회칙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